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개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가액보다 배당받는 금액이 큰 경우 해당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하여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,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1. ~ 12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3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.

1.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)에 따른 대주주
2.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(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3(배당소득의 범위) ① ~ ⑤ (생략)	제26조의3(배당소득의 범위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「상법」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 당(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 당은 제외한다)은 법 제17조제1 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단서 신설>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.</u>
⑦ (생략)	<u>1.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) 에 따른 대주주</u> <u>2.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(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233